

##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9월 15일 시행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5.(화))
-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 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①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하였다.

\* 사례: 급박하게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쏘카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주소 정보를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함(21.2월)

② 또한,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개편하였다.

둘째, 영상정보·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등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개선하였다.

①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해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 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또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비하였다.

※ ①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②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③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통지, ④개인정보의 안전조치 기준, ⑤과징금·과태료·형벌 등 제재

셋째,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강화하였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접속기록 분석·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공공시스템에 권한없이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였다.

※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22.7.14. 관계부처 합동) 이행

넷째,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였다.

①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양화하고, 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 이전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하여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법 개정사항 중 시행일이 다른 개인정보 전송요구 등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별 주요 개정사항 >

<p>'23. 9. 15.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생명 신체 등 보호를 위한 법 체계 정비</li> <li>▶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 개선, 주요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강화</li> <li>▶ 온오프라인 이중 규제 개선, 과징금 제도 개선</li> </ul>
<p>'24. 3. 15.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손해배상의 보장</li> <li>▶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li> <li>▶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자격요건)</li> </ul>
<p>'24. 3. 15. ~ '25. 3. 15.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전송요구(이동권)</li> </ul>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에 앞서 민간부문(9월 13일), 공공분야(9월 14일)를 대상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를 엘타워(양재동, 오후 3시~5시)에서 진행하고, 소상공인·전문 수탁자(호스팅)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현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안내서는 9월 중 초안 공개 후 현장 질답·의견과 고시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2월 종합 컨퍼런스 개최 시 발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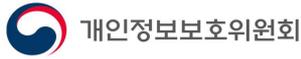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설명 일정 >

<p>'23.9</p>	<p>개정법 설명회 : 민간(9.13.), 공공(9.14.), 소상공인·수탁자 등 분야별 추진(9월~)</p> <p>개정법 안내서 초안 공개(9월말) 및 현장 의견 수렴(~11월)</p>
<p>'23.10</p>	<p>안전조치, 과징금, 처리방침 평가 등 주요 고시 개정사항 안내(10~12월)</p>
<p>'23.12</p>	<p>개정법 안내서 발간 및 종합 컨퍼런스 개최(12월) ※ 현장의견 및 고시 가이드라인 등 개정사항 반영</p>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2011년 제정 이후 정부 주도로 추진한 최초의 전면 개정으로, 그 동안의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요구와 현장의 규제개선 목소리를 충실히 담았다”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현장 맞춤형 홍보와 제도 활동에 집중하여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동의·통지>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직동 (02-2100-3051)
		담당자	사무관	임종철 (02-2100-3055)
<과징금> <유출신고>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영수 (02-2100-3101)
		담당자	사무관	장수용 (02-2100-3103)
<영상정보> <안전조치>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	책임자	과 장	고낙준 (02-2100-3061)
		담당자	사무관	정종일 (02-2100-3066)
<국외이전>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윤정 (02-2100-2481)
		담당자	사무관	김성은 (02-2100-2482)
<분쟁조정>	조사조정국 분쟁조정과	책임자	과 장	고남현 (02-2100-3141)
		담당자	서기관	김용학 (02-2100-3144)
<처리방침> <파일등록>	개인정보정책국 자율보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대현 (02-2100-3081)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2-2100-3050)
			사무관	황주영 (02-2100-3080)



# 9월 15일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변경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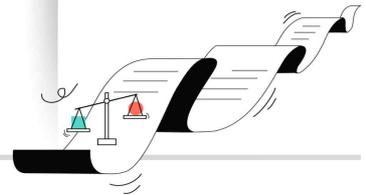


##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 1**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한 법 체계 정비
- 2**  
개인정보 처리 요건 개선 및 처리방침 평가 도입
- 3**  
개인정보 분쟁조정 강화
- 4**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국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 온·오프라인 이중 규제 등 개선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 개선
- 2**  
수집 출처 통지 및 이용·제공 내역 통지 제도 합리화
- 3**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확대
- 4**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통지 일원화
- 5**  
안전조치 기준 일원화
- 6**  
개인정보 파기 특례 정비
- 7**  
벌칙 규정 개선



## 공공기관 안전성 강화 등

- 1**  
주요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 2**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 확대
- 3**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
- 4**  
통계법 적용 제외 규정개선
- 5**  
처리위탁·재위탁 시 개인정보 보호 개선

## 글로벌 스탠다드

- 1**  
국외 이전 다양화 및 이전 중지명령 도입
- 2**  
과징금 제도 개선

## 참고2

##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변경사항 (요약)

구분	개정 사항	주요 내용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①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한 법 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경우 우선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가능하도록 개선</li> <li>· 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경우에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안전조치·파기·권리보장 등 준수)</li> <li>· 국민의 민감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리도록 함</li> </ul>
	② 개인정보 처리 요건 개선 및 처리방침 평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 외에도 계약 이행 등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다양화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 등 동의방법에 대한 원칙을 명시함(2024.9.15.시행)</li> <li>· 개인정보 처리 요건 개선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권고할 수 있도록 함</li> </ul>
	③ 개인정보 분쟁조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li> <li>· 15일 이내 거부 의사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li> </ul>
	④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국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li> </ul>
온·오프라인 이중 규제 개선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통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능</li> <li>·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주체가 알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 구축 사이트에 공지하게 함</li> </ul>
	② 수집 출처 통지 및 이용·제공 내역 통지 제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지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일원화하고 통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선</li> <li>· 서비스·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알림창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여 통지 방법을 다양화</li> </ul>
	③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알기 쉬운 언어 사용 등 의무 확대</li> </ul>
	④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과 오프라인·공공기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유출 신고·통지를 일원화하여 알게된 때부터 72시간 내 통지</li> </ul>
	⑤ 안전조치 기준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있던 안전조치 기준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기술 중립적으로 정비</li> </ul>

구분	개정 사항	주요 내용
	⑥ 개인정보 파기 특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1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파기 등 조치를 강제했던 규정 삭제</li> </ul>
	⑦ 벌칙 규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상공인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경미한 위반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li> <li>형벌보다 경제적 제재로 사업자의 실질적 억지력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전환</li> </ul>
공공기관 안전성 강화 등	① 주요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 따라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2024.9.15.시행)</li> </ul>
	②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이더라도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하여 관리</li> <li>통계법 적용 제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도 60일 내에 개인정보위에 등록</li> </ul>
	③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향평가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을 강화</li> <li>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2년 이내 영향평가 실시 후 개인정보위에 결과 제출</li> </ul>
	④ 통계법 적용 제외 규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전에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법 제3장 부터 제7장까지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통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적용하도록 개정</li> </ul>
	⑤ 처리위탁·재위탁 보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탁자의 범위에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자 동의를 받도록 함</li> <li>수탁자의 경우에도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과태료·형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li> </ul>
글로벌 스탠다드	① 국외 이전 및 이전 중지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국가등 인정,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 국외 이전 가능하도록 다양화</li> <li>법을 위반하거나 보호수준이 취약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국외 이전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li> </ul>
	② 과징금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징금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한정하되,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함</li> <li>과징금 규정 일원화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자에게 과징금 규정 적용</li> <li>중소·영세사업자 등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 범위 내에서 연기·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li> </ul>

## 1.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익 보호

### ①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한 법 체계 정비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급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였다.

\* 사례: 급박하게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쏘카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주소 정보를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함(21.2월)

코로나19 등 공중위생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으나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파기·정보주체의 권리 등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 사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이 배제되어 파기·안전조치 등 의무 미적용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민의 민감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지 않도록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공개 게시판 등 상호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공개 설정 후 정보주체가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예) 카카오맵 서비스 이용자가 스스로 저장한 폴더가 기본설정이 공개로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성생활, 건강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여 공개된 사례(21.1월)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하였다.

\* 사례: 경찰관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연락(19.8월)

## ② 동의 등 개인정보 처리 요건 개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의방법에 대한 원칙(시행일: '24.9.15.)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도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계약 상황임을 고려하여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 처리 요건의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및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을 선정한 후 개인정보 처리가 적정한지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권고, 공표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③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분쟁조정 강화

현재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참여 의무가 있으나, 9월 15일부터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참여해야 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하여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거부의를 전자우편·등기우편·인편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조정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중요하다.

##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보주체인 국민의 정보접근권 강화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정보주체가 법원을 통해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2. 규제개선 : 온-오프라인 동일기준 적용, 영상정보처리 기준 마련

---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개선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통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서의 출입 통제, 시장현황 파악 등을 위한 통계 목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드론·자율주행차 등에 부착하는 촬영장치 등)가 국민의 일상에 자리잡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촬영하는 과정에서 안내판, 소리 등을 통해 촬영사실을 충분히 알린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촬영사실을 표시하였으나 정보주체가 쉽게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위가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촬영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수집 출처등 통지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 개선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출처를 통지해야 하는 경우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경우의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수집 출처등 통지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서비스 및 기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함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준: ①5만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②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팝업·알람 등 알림창\*을 통해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이용·제공 내역 통지의 경우는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는 경우에 한함

### ③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종전에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하여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고지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9월 15일부터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무가 확대된다.

### ④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통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①1천명 이상인 경우, ②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인 경우, ③해킹 등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인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는 유출규모와 무관하게 72시간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였다.

### ⑤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기준 일원화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기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기준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안전조치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특정 기술을 채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기술 중립적으로 정비하였다.

\* (예) 백신, 보안서버 등 용어 삭제, 저장전송 시 암호화 외에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 추가 등

### ⑥ 1년 동안 서비스 이용 없는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의무(유효기간제) 정비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의무적으로 파기 또는 별도 분리 보관하도록 한 유효기간제 규정은 삭제하였다.

\* (예)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 여행이 제한되어 면세점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이 1년 동안 없어서 파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용자와 기업 모두 불편 발생

이에 따라, 개별 기업·기관 등의 서비스 특성, 정보주체의 이용주기 등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휴면정책 채택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⑦ 벌칙 규정 개선

종전에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의무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의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로 소상공인이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규정은 삭제\* 하는 대신 시정조치 명령 후 불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한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도록 제재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예) CCTV 안내판 설치의무 과태료, 손해배상의 보장(보험) 과태료, 성격 상 과징금 대상인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등

형벌 규정 중에서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경우에는 해당 형벌규정\*은 삭제하고 과징금을 강화하였고, 과태료 규정이 있는 형벌규정\*\*은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정비하였다.

\* (과징금 전환) ①온라인 사업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②개인 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

\*\* (과태료 전환) 온라인 사업자가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

## 3. 공공분야 등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 강화

---

### ①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22.7.14.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이용기관은 아래의 조치를 ’24. 9. 15.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 n번방 사건(’19년), 송파 살인사건(’21.12월), 신당동 역무원 살인사건(’22.9월) 등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주요내용 >**

구분	주요 내용
1. 내부 관리계획	공공시스템별 안전성 확보 조치 포함
2. 접근권한 부여	공공시스템 이용기관이 접근권한 부여 등이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
3. 접속기록	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분석·점검·관리 등의 조치
4. 정보주체 통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
5. 전담부서·인력 배치	공공시스템 이용기관 수 등을 고려 전담부서 지정 또는 전담인력 배치
6. 관리책임자 지정	공공시스템 각각에 대해 총괄관리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
7.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	운영기관, 수탁자, 주요 이용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설치·운영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공개 범위 확대**

그동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이 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 관리 필요가 없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등록 예외 : ①수당 지급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경우, ②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 ③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한편, 법 시행(9월 15일) 당시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법 부칙 제9조)

**③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

개인정보위 또는 공공기관이 영향평가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은 법 시행(9월 15일) 당시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부칙 제10조)

#### ④ 법 적용 일부 제외 대상에서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삭제

종전에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통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⑤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 시 보호조치 강화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범위에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였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재위탁이 반복되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어 다시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되 다시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탁자의 동의는 그 형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성격, 위탁계약의 특성 등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종전에는 수탁자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도 과징금·과태료·형벌 적용 규정이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수탁자의 경우에도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범위에서 과징금·과태료·형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4. 글로벌 스탠다드 반영

---

### ① 국외 이전 및 이전 중지명령 도입

디지털 환경 전환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증가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였다.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개인정보 위가 고시하는 인증을 획득한 기업으로 국외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도 국외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외 이전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거나 보호수준이 취약하여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국외이전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과징금 제도 개선

종전에는 과징금 상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설정하게 된다. 다만,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모두 확보하도록 하였고,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 ①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 매출액, ②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근거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매출액

과징금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까지 확대하여 적용된다.

한편, 중소·영세사업자 등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